

<p>“지방교육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</p> <p>[별표]의 일반직 4(5)급란 및 5급란중 “지방행정사무관”을 “지방교육행정사무관”으로, 일반직 6급란중 “지방행정주사”를 “지방교육행정주사”로, 일반직 7급란중 “지방행정주사보”를 “지방교육행정주사보”로 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199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.</p>	<p>중은행”을 “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교육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”으로 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<p>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</p> <p>제1조(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4조제1항중 “지방행정사무관”을 “지방교육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</p>	<p>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[별표 2]의 중학교(남부)중 “한강여자중학교”란을 삭제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<p>제2조(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설치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3조제1항중 “지방행정사무관”을 “지방교육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199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.</p>	<p>17. 서울特別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(서울特別市長 提出)</p> <p>(16時 10分)</p> <p>○議長 白昌鉉 다음은 議事日程 第17項 서울特別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都市整備委員會 崔相燮議員님 나오셔서 審査結果를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○崔相燮議員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, 都市整備委員會所屬 崔相燮議員입니다.</p>
<p>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6조제2항중 “사회교육과장”을 “기획예산담당관”으로 한다.</p> <p>제21조제2항중 “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고시한 시중은행의 일반여신금리에”를 “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교육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금리에”로 한다.</p> <p>제26조중 “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고시한 시</p>	<p>本議員이 都市整備委員會에서 審査한 서울特別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.</p> <p>이번에 上程된 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은 지난 93年 8月 9日字 建築法施行令이 改正됨에 따라 現行條例를 上位法인 建築法施行令과 一致시키도록 하고 또 그간 條例運營上 現況과 맞지 않는 問題點이 있어 이를 補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 그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첫째, 現行條例 中 서울시 建築審議委員會의 審議 對象이 11層 이상으로서 1萬㎡ 이상의 경우만 審議하게 되던 것을 적절한 都市美觀을 維持하기 위하여 11層 미만의 建</p>